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708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1708호)이 2026. 5. 26.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◇ 개정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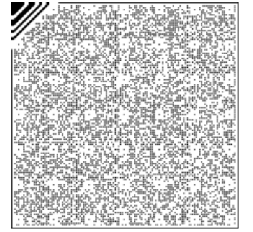
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,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(정의) '특수의료용도식품'을 질병,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
나. (품목제조신고)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·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·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 강화
- 다. (위생관리책임자)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·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, 선임·해임 시 신고
- 라. (행정제재 등)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,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

2. 아울러, 개정법률은 2026. 5. 26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법률 제21708호) 1부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61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5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

주무관 **손익재** 연구관 **홍정미**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. 5. 26.
과장 **최종동**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6024 (2026. 5. 26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4 팩스번호 043-719-2000 / sij0301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